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6.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sup>1)</sup>

-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1년 5월 25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II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조 4,123억원 대비 10.5%, 4조 2,370억원을 증액한 44조 6,494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①=②+③	②	③			
총 계 규 모	40,412,386	40,156,241	256,171	44,649,415	4,237,028	10.5
일 반 회 계	27,921,933	27,725,766	196,167	31,544,766	3,622,832	13.0
특 별 회 계	12,490,452	12,430,474	59,978	13,104,648	614,195	4.9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3조 6,228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20회계연도 결산상 세계잉여금 3조 4,652억 7,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 ②국고보조금등 1,498억 3,000만원, ③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34억 5,9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74억 6,300만원, ④세외수입 △34억 3,500만원 감액, ⑤내부거래 2억 3,900만원 증액 등을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6,141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0조 4,123억 8,600만원)보다 10.5%, 4조 2,370억 2,8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3조 6,228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행정국 사업중 자치구 조정교부금(7,684억 5,800만원), 평생교육국 사업중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5,964억 9,6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하여 34개 실·국·본부의 438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가 169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6,141억 9,500만원을 증·감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 기능별 세출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증 감 륜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44,649,415	100.0	40,412,386	100.0	4,237,028	10.5
일반공공행정	8,638,197	19.3	6,589,114	16.3	2,049,083	31.1
공공질서및안전	1,325,169	2.9	1,263,588	3.1	61,581	4.8
교 육	4,352,485	9.7	3,747,877	9.2	604,608	16.1
문 화 및 관 광	813,419	1.8	779,432	1.9	33,986	4.3
환 경	2,402,540	5.3	2,228,408	5.5	174,131	7.8
사 회 복 지	15,117,930	33.8	14,630,923	36.2	487,007	3.3
보 건	565,557	1.2	518,689	1.2	46,868	9.0
농림해양수산	69,840	0.1	65,153	0.1	4,687	7.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69,691	1.5	486,178	1.2	183,513	37.7
교 통 및 물 류	5,544,596	12.4	5,121,633	12.6	422,962	8.2
국토및지역개발	3,017,858	6.7	2,857,204	7.0	160,654	5.6
과 학 기 술	1,644	0	1,644	0	-	-
예 비 비	153,718	0.3	152,305	0.3	1,412	0.9
기 타	1,976,762	4.4	1,970,232	4.8	6,530	0.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1) 지난해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난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3조 9,206억 8,700만원으로 이월액(3,523억 4,8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1,030억 6,2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 4,652억 7,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관련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 4,652억 7,600만원)중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9,774억 8,3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출(5,964억 9,700만원), ③타 회계전출 등(1,155억 9,100만원)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④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8,878억 5,100만원)에 적립하여야 하는 바
  - 세계잉여금중 법정정산을 위해 세입예산에 **법정잉여금** 2조 5,774억 2,400만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 요청하였으며
- 법정정산분을 차감한 가용자원(8,878억 5,100만원)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주 요 증 감 내 역
잉 여 금	0	3,465,276	3,465,276	순 세계잉여금·법정잉여금 3,465,276
순 세 계 잉 여 금	0	887,851	887,851	순 세 계 잉 여 금 887,851
법 정 잉 여 금	0	2,577,424	2,577,424	법 정 잉 여 금 소 계 2,577,424
				조 정 교 부 금 교 부 768,458 <sup>주1)</sup>
				재 정 보 전 금 교 부 105,944 <sup>주2)</sup>
				징 수 교 부 금 교 부 103,080 <sup>주3)</sup>
				교 육 청 전 출 596,497 <sup>주4)</sup>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78,474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20%) 22,421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11,210
				소 방 특 별 회 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4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 정 안 정 화 계 정 ) 887,851 <sup>주5)</sup>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45

주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년도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보통세 예결산 차액 3조 4,002억 5,900만원 \* 22.6% = 7,684억 5,800만원

주2) '20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반영

주3) '20년 시세입 초과징수분의 교부금을 '21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추경 반영

주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20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①지방세 정산분(3,401억원), ② 담배소비세 정산분(183억 8,200만원), ③지방교육세 정산분(2,380억 1,400만원)

주5)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 2)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7,749억 1,700만원)보다 △34억 3,5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87억 2,000만원)은 증액조정하고, **경상적세외수입**(△121억 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4,8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출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수입**중 도로점용료를 당초 834억 1,900만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함(△25%)에 따라 자치구 징수교부금 △121억 7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기타수입중 그외수입을 기정예산(1,950억 100만원)보다 87억 2,0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21년 5월, 지역개발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잔여 자금(66억 3,000만원)등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기타과태료** 수입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4,8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1,763억 4,700만원)보다 6.1%, 109억 2,200만원을 증액한 1,872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①보통교부세 34억 5,900만원과 ②소방안전교부세 74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부세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지방교부세	176,347 <sup>주1)</sup>	10,922	187,270
보통교부세	139,587	3,459	143,046
소방안전교부세	33,670	7,463	41,133

주1) 특별교부세 30억 9,000만원 간주처리

-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395억 8,700만원)보다 2.4%, 34억 5,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21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당초 내시보다 증액된 1,396억 6,300만원으로 확정통보 하고, '20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정산분(33억 8,300만원)도 교부함에 따라 추경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세입예산을 경정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보통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21년도 확 정 통 보 액 (20.12.31)	' 2 0 회 계 연 도 지방교부세정산분 ( '21. 4. 8)	'21년도 보 통 교 부 세 (예산액)	증 · 감
Ⓐ	①	②	Ⓑ=①+②	Ⓒ=Ⓑ-Ⓐ
139,587	139,663	3,383	143,046	3,459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336억 7,000만원)보다 74억 6,3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21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358억 9,800만원)과 '20년도 세계잉여금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52억 3,500만원)을 통보함에 따라 411억 3,3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20.12.28)	'20년도 세계잉여금 소 방 안 전 교 부 세 시 · 도 별 교 부 액 ( '21. 4. 9)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증 · 감
Ⓐ	①	②	Ⓑ=①+②	Ⓒ=Ⓑ-Ⓐ
33,670	35,898	5,235	41,133	7,463

#### 4)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511)의 경우, 기정예산(5조 4,879억 800만원) 보다 2.7%, 1,498억 3,000만원이 증액된 5조 6,377억 3,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5조 2,042억 1,500만원)보다 1,317억 800만원 증액된 5조 3,359억 2,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내시와 정부추경 등에 따라 **전기차 보급**(750억 5,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225억 3,000만원),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49억 6,2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31억 1,100만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25억 2,800만원)등 45개 사업에 대해 1,347억 5,1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하고,
    -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16억 7,100만원), **희망키움통장Ⅱ**(△8억 5,500만원) 등 15개 사업에 대해 △30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세입과목인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과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지방권한이양사무 비용지원)에 17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의 경우, 30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기정예산(2,207억 4,700만원)보다 7.4%, 163억 7,300만원이 증액된 2,371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5,487,908	149,830	5,637,739	
국고보조금	5,204,215	131,708	5,335,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822</li> <li>◦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15</li> <li>◦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307</li> <li>◦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257</li> <li>◦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244</li> <li>◦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09</li> <li>◦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50</li> <li>◦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지원 5</li> <li>◦자치구 가족센터 건립 △1,671</li> <li>◦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95</li> <li>◦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54</li> <li>◦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375</li> <li>◦후계농업경영인 육성 △0.4</li> <li>◦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0</li> <li>◦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0.5</li> <li>◦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50</li> <li>◦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46</li> <li>◦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25</li> <li>◦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78</li> <li>◦노인맞춤돌봄서비스 △99</li> <li>◦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0</li> <li>◦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39</li> <li>◦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2,530</li> <li>◦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43</li> <li>◦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609</li> <li>◦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0.4</li> <li>◦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746</li> <li>◦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2,528</li> <li>◦자활근로사업 지원 3,315</li> <li>◦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01</li> <li>◦내일키움통장 323</li> <li>◦청년희망키움통장 281</li> <li>◦희망키움통장Ⅱ △855</li> <li>◦청년저축계좌 966</li> <li>◦희망키움통장Ⅰ △30</li> <li>◦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50</li> <li>◦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111</li> <li>◦한양도성 보수·정비 83</li> </ul>

〈표 3-5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고 보 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140</li> <li>◦한양도성 통합한재망 구축운영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19</li> <li>◦스마트 한성백제박물관 구축 지원 102</li> <li>◦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55</li> <li>◦전기차 보급 75,056</li> <li>◦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850</li> <li>◦자치구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보급사업 1,648</li> <li>◦자치구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추가 보급사업 27</li> <li>◦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252</li> <li>◦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2,816</li> <li>◦공공선별시설 현대화 707</li> <li>◦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135</li> <li>◦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지원사업 634</li> <li>◦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운영보조) 358</li> <li>◦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보조) 12</li> <li>◦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281</li> <li>◦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113</li> <li>◦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 △9</li> <li>◦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962</li> <li>◦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170</li> <li>◦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70</li> <li>◦박물관 유지·운영 35</li> </ul>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보 조 금	62,945	1,748	64,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 가족센터 건립 1,671</li> <li>◦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지방 권한이양사무 비용지원) 77</li> </ul>
기 금	220,747	16,373	237,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li> <li>◦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8</li> <li>◦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04</li> <li>◦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15</li> <li>◦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93</li> <li>◦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57</li> <li>◦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41</li> <li>◦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2</li> <li>◦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556</li> <li>◦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li> <li>◦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6</li>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0.6</li> </ul>

〈표 3-5C〉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span style="float: right;">△9</span></li> <li>◦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span style="float: right;">1,800</span></li> <li>◦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span style="float: right;">123</span></li> <li>◦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 <span style="float: right;">44</span></li> <li>◦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span style="float: right;">242</span></li> <li>◦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span style="float: right;">9,330</span></li> <li>◦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지원 <span style="float: right;">△9</span></li> <li>◦통합문화이용권 지원 <span style="float: right;">1,393</span></li> <li>◦자치구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조명 보급사업 <span style="float: right;">△1,648</span></li> <li>◦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국비) <span style="float: right;">2</span></li> <li>◦응급의료기관 지원 <span style="float: right;">705</span></li> <li>◦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 <span style="float: right;">△1</span></li> <li>◦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span style="float: right;">220</span></li> <li>◦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span style="float: right;">332</span></li> <li>◦모바일 헬스케어 <span style="float: right;">△6</span></li> <li>◦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지원 <span style="float: right;">△53</span></li> <li>◦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span style="float: right;">△23</span></li> </ul>

##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중 전입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3,356억 4,500만원) 보다 2억 3,9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한 바, 복지부와 교육부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와 시교육청 전입금 매칭 부담분을 세입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한 것임

〈표 3-6〉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세 외 수 입	1,774,917	△3,435	1,771,481	
경상적세외수입 (도로사용료)	1,281,671	△12,107	1,269,564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점용료 감면 △12,107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485,757	8,720	494,477	◦지역개발기금 외 5개 사업 수입 8,72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기타과태료)	7,488	△48	7,439	◦개업공인증개사 등의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48
지 방 교 부 세	176,347	10,922	187,270	
보 통 교 부 세 (분권교부세)	139,587	3,459	143,046	◦분권교부세 추가분 3,459 -'21년도 확정내시 차액 76 -'20회계연도 정산분 3,383
특 별 교 부 세	3,090	0	3,090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3,090
소방안전교부세	33,670	7,463	41,133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 7,463
보 조 금	5,487,908	149,830	5,637,739	
국 고 보 조 금	5,204,215	131,708	5,335,924	◦회계연도중 증·감교부 131,708
국 가 균 형 발 전 특별회계 보조금	62,945	1,748	64,694	◦회계연도중 증·감교부 1,748
기 금	220,747	16,373	237,121	◦정부 기금사업 증감 교부 16,373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422,454	3,465,515	3,887,969	
전 년 도 이 월 금	46,267	0	46,267	
용자금원금수입	741	0	741	
보 전 수 입 등 (순세계잉여금)	0	887,851	887,851	◦'20회계연도결산결과 잉여금 887,851
보 전 수 입 등 (법정잉여금)	0	2,577,424	2,577,424	◦'20회계연도결산결과 잉여금 2,577,424
내 부 거 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75,445	239	375,68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3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2조 4,904억 5,200만원)보다 4.9%, 6,141억 9,500만원 증액된 13조 1,046억 4,8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7A〉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12,490,452	614,195	13,104,648	
공기업특별회계	1,660,292	22,171	1,682,463	
수도사업특별회계	738,100	49,398	787,4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도사용료수익 <span style="float: right;">△14,288</span></li> <li>◦타회계전입금수익 <span style="float: right;">17,888</span></li> <li>◦전기손익수정이익 <span style="float: right;">37,000</span></li>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8,799</span></li> </ul>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2,192	△27,227	894,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27,227</span></li> </ul>
기타특별회계	10,830,160	592,024	11,422,18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14,087	191,556	1,605,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보조금 <span style="float: right;">58,199</span></li>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133,357</span></li> </ul>
교통사업특별회계	1,633,223	87,831	1,721,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교부세 <span style="float: right;">800</span></li> <li>◦국고보조금 <span style="float: right;">4,564</span></li> <li>◦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span style="float: right;">10,999</span></li>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33,180</span></li> <li>◦기타회계전입금 <span style="float: right;">26,288</span></li> <li>◦예수금수입 <span style="float: right;">12,000</span></li> </ul>

〈표 3-7B〉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10,380	19,440	329,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19,159</span></li> <li>◦기타회계전입금 <span style="float: right;">38,600</span></li> </ul>
주택사업 특별회계	2,560,218	103,093	2,663,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임대료 <span style="float: right;">△89,719</span></li> <li>◦지난연도수입 <span style="float: right;">17,483</span></li> <li>◦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span style="float: right;">△1,300</span></li> <li>◦기금 <span style="float: right;">△5,850</span></li>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18,458</span></li> <li>◦기타회계전입금 <span style="float: right;">164,021</span></li> </ul>
도시개발 특별회계	2,141,842	129,972	2,271,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각사업수입 <span style="float: right;">30,000</span></li> <li>◦국고보조금 <span style="float: right;">8,461</span></li> <li>◦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span style="float: right;">△128</span></li>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13,164</span></li> <li>◦기타회계전입금 <span style="float: right;">78,474</span></li> </ul>
균형발전 특별회계	165,136	25,017	190,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11,717</span></li> <li>◦기타회계전입금 <span style="float: right;">13,300</span></li> </ul>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5,624	4,340	29,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4,374</span></li> <li>◦예탁금이자수입 <span style="float: right;">△34</span></li> </ul>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8,567	10,378	1,678,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보조금(의료급여사업) <span style="float: right;">15</span></li> <li>◦기타회계전입금 <span style="float: right;">10,363</span></li> </ul>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4,367	△479	33,8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473</span></li> <li>◦국고보조금 사용잔액 <span style="float: right;">△5</span></li> </ul>
소방 특별회계	876,712	20,872	897,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 <span style="float: right;">△5</span></li> <li>◦순세계잉여금 <span style="float: right;">35,484</span></li> <li>◦기타회계전입금 <span style="float: right;">△14,607</span></li> </ul>

## 1)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 1,333억 5,7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117억 1,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43억 7,400만원)의 경우에도 '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편성 요청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경우, '21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회계가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 요청한 바,
    - **소방특별회계**(354억 8,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331억 8,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184억 5,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131억 6,4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87억 9,900만원)는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 요청하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272억 2,7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91억 5,9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4억 7,3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8〉 순세계잉여금 처리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 2 1 년 도 본 예 산 기 반 영 액	' 2 0 회 계 연 도 결 산 결 과 순 세 계 잉 여 금	추 증 경 · 안 감 청 액	추 경 후 잔 액
	①	②	③	②-(①+③)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3,000	15,772	△27,227	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4,292	△4,867	△19,159	0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324	2,850	△473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87	2,588	0	△999
소별회방 특별회계	1,372	36,857	35,484	0
교통사업 특별회계	32,436	65,616	33,180	0
주택사업 특별회계	136,953	155,411	18,458	0
도시개발 특별회계	74,377	87,541	13,164	0
수도사업 특별회계	26,844	35,643	8,799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회계연도 결산서」 및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다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보다 실제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가 감소한 사례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계잉여금 감소분만큼 감액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만일 추경을 통해 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해 감액조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21회계연도 결산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바,
  - 서울시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음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해당 회계연도 결산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전년 11월,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음
  - 이러한 관행에 대해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예결특위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고 있음에도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9개 특별회계에서 '21년도 세입 예산안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가 관련법을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 결산으로 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차년도 본예산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 4개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에 대한 국비 506억 2,500만원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로 국비 75억 7,400만원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577억 5,2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581억 9,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국비 16억원, 저상버스 도입 국비 10억 4,400만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영지구 C-ITS 구축** 19억 2,000만원에 대해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복원** 60억원,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24억 1,200만원, **백악구간 탐방여건 개선** 4,900만원에 대해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국비 1,500만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8,309억 2,4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1,5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9〉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7,752	58,199	115,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50,625</li> <li>◦신림선 경전철 건설 7,574</li> </ul>
교통사업 특별회계	42,765	4,564	47,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600</li> <li>◦저상버스 도입 1,044</li> <li>◦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1,920</li> </ul>
도시개발 특별회계	80,094	8,461	88,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납토성복원 6,000</li> <li>◦백악구간 탐방여건 개선 49</li> <li>◦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2,412</li> </ul>
의료급여기 특별회계	830,924	15	830,9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5</li> </ul>

○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억 1,000만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106억 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3억 6,900만원)은 증액 통보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 감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268억 4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109억 9,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감액(△13억원)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300억 7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13억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2억 8,100만원) 증액 통보되고,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4억 1,000만원) 감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214억 5,0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1억 2,800만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교통사업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6,804	10,999	37,8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10</li> <li>◦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250</li> <li>◦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10,670</li> <li>◦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69</li> </ul>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0,007	△1,300	28,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300</li> </ul>
도시개발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1,450	△128	21,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281</li> <li>◦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410</li> </ul>

-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감액(△58억 5,000만원) 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58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이고,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금이 감액(△500만원)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5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1〉 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금	708,005	△5,850	702,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주택정비사업 △5,850</li> </ul>
소방특별회계	기금	1,157	△5	1,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금 △5</li> </ul>

### 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가 세외수입 세입처리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인 바,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7,293억 5,400만원)보다 △722억 3,6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897억 1,900만원 감액조정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74억 8,300만원을 증액조정한 것임
  -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6,647억 4,4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897억 1,9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37억 8,000만원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보증금 △1,135억원을 증·감조정 요청한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난연도수입을 기정예산(41억 3,300만원)보다 174억 8,3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을 기정예산(154억 8,900만원)보다 300억원 증액한 454억 8,9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을 기정예산(6,721억 2,500만원)보다 227억 1,1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142억 8,800만원 감액조정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중 그외수입을 370억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4)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음
- 12개의 특별회계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특별교부세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에 대해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방교부세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지방교부세	0	800	800
특별교부세	0	800	800

##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 1. 추경예산의 특징과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①'20회계연도 결산결과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이 초과수납 되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 4,652억 7,600만원과 ②추가교부 되는 중앙정부이전재원 2,365억 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40조 4,123억 8,600만원)보다 10.5%, 4조 2,370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일반회계에서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법정 의무경비 정산후 남은 금액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는 바,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 4,652억 7,600만원)의 경우, ㉠법정 의무경비(1조 6,895억 7,200만원)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8,878억 5,100만원)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8,878억 5,100만원이며, 가용재원(8,878억 5,100만원) 전액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임

〈표 4-1〉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법정의무경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가용재원
	계	자치구교부	교육청전출	타회계전출		
3,465,276	1,689,572	977,483 <sup>주1)</sup>	596,497 <sup>주2)</sup>	115,591 <sup>주3)</sup>	887,851	887,851 <sup>주4)</sup>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449 ('21. 6.10)

주1) 조정교부금(7,684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1,059억 4,400만원), 징수교부금(1,030억 8,000만원)

주2) 지방세 전출(3,401억원), 담배소비세 전출(183억 8,2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2,380억 1,400만원)

주3)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784억 7,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224억 2,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112억 1,000만원), 소방특별회계 법정전출금(34억 8,400만원)

주4) '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전액 반영

○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은 '21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결('20.12)된 내용 중 세입·세출예산총액(제1조)과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 명시이월 관련 사항(제5조)을 수정요청한 것으로,

-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반회계 예비비를 연동하여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제출한 것임

○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의 경우, 당초 40조 1,562억 4,1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나 44조 6,494억 1,500만원으로 증액조정을 요청한 바,

- 제출된 추경안에서 기정예산(40조 4,123억 8,600만원)보다 4조 2,370억 2,800만원 증액된 44조 6,494억 1,500만원을 편성 요청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총액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당초 ①일반예비비 1,308억 9,700만원과 ②목

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한 1,508억 9,700만원으로 의결한 것이나, ① 일반예비비를 당초(1,308억 9,700만원)보다 5,200만원 증액된 1,309억 4,900만원으로 조정요청한 것임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목적예비비의 경우, 편성한도가 없으나, 일반예비비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 예산총칙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1,309억 4,900만원)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총액(31조 5,447억 6,600만원)의 0.4%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추경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1,509억 4,900만원)는 당초 본예산(1,508억 9,700만원)보다 0.03%, 5,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규모(31조 5,447억 6,600만원)가 본예산(27조 7,257억 6,600만원) 대비 13.7%, 3조 8,189억 9,900만원 증액하여 편성 요청한 상태에서 예비비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됨에 따라 과소 편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직전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규모와 '21년도 1분기의 예비비 승인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 2.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법정경비 등의 정산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 정산 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정산, ④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정산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였음
- 이번 회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0회계연도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 4,652억 7,6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9,774억 8,3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5,964억 9,700만원), ③타회계 전출(1,121억 700만원) 등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 1조 6,895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관련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세계잉여금 3조 4,652억 7,600만원에서 법정의무경비 1조 6,895억 7,200만원을 제한 1조 7,757억 400만원중 50%인 8,878억 5,1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세계잉여금에서(3조 4,652, 7,600만원) 법정경비(2조 5,774억 2,400만원)를 제한 8,878억 5,1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액	비고	
계		3,465,276		
법 정 의 무 경 비	법 정 의 무 경 비 계	1,689,572		
	자 치 구 정 산 금	소 계	977,483	
		조 정 교 부 금	768,458	
		재 정 보 전 금	105,944	
		시세 징수교부금	103,080	
	교 육 청 전 출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소 계	596,497	
		지 방 세 전 출	340,100	
		담배소비세전출	18,382	
		지방교육세전출	238,014	
	타 회 계 전 출 (교육비특별회계전출 제외)	소 계	115,591	
		도시개발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78,474	'20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증 수액 1,121억 중 70% 추경반영
		주택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22,421	'20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증 수액 1,121억 중 20% 추경반영 (도정계정, 재촉계정 각 10%)
		교통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11,210	'20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1,121억 중 10% 추경 반영
		소방 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3,484	「지방세법」 제142조 「지방교부세법」 제9조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제4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887,85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가 용 재 원 사 용 ( 순 세 계 잉 여 금 )		887,851		

### 3.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증·감편성 요청

- 국고보조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 등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인 바,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된 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세입 예산에 국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Matching)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예산이 편성된 후 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증액교부 되거나 감액교부 되면 추경안을 통해 기 편성된 국비를 세입·세출예산에서 증·감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시비도 세출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비의 경우,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으나 회계연도중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를 모니터링하여 추경을 통해 편성액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에는 국고보조금의 부족수납을 최소화하고, 세출에는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비효율적인 운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1)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대응편성의 경우, 기정예산(1조 5,281억 3,700만원)보다 31.5%, 4,813억 2,300만원 증액된 2조 94억 6,0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바
  - **전기차 보급**(국비 750억 5,600만원·시비 468억 8,900만원)을 포함한 77개 세부사업(4,813억 2,300만원)에 대해 추가교부 되는 국비(2,342억 1,600만원)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2,471억 700만원)를 증액편성 요청하고,
  - 77개 세부사업중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국비 78억 6,600만원·시비 108억 2,400만원)을 포함한 17개 사업(1,039억 9,100만원)에 대해 신규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4-3〉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계	77	(X730,502) 1,528,137	(X234,216) 481,323	(X964,718) 2,009,460
기 존 사 업	60	(X730,502) 1,528,137	(X169,035) 377,332	(X899,537) 1,905,469
신 규 사 업	17	(X-) -	(X65,181) 103,991	(X65,181) 103,991

〈표 4-4A〉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10,139) 13,961	(x2,822) 3,784	(x12,961) 17,74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x416) 833	(x115) 230	(x531) 1,063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x86) 86	(x57) 200	(x143) 286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x989) 2,685	(x2) 5	(x992) 2,690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x17) 35	(x8) 16	(x25) 51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x885) 2,934	(x104) 208	(x989) 3,142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x37) 113	(x15) 31	(x53) 144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23,701) 148,616	(x1,307) 3,443	(x25,009) 152,059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x4,325) 19,271	(x1,257) 4,808	(x5,583) 24,079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x29,155) 104,423	(x3,244) 8,544	(x32,399) 112,967
여성가족정책실	요보호아동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x2,246) 8,316	(x41) 104	(x2,288) 8,42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보호전담요원 총원	(x810) 1,620	(x309) 618	(x1,119) 2,238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x-) -	(x50) 126	(x50) 126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x-) -	(x5) 14	(x5) 14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x22,270) 44,541	(x3,556) 7,112	(x25,827) 51,654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x128) 257	(x1) 2	(x129) 259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x367) 735	(x86) 172	(x453) 907
여성가족정책실	다함께 돌봄사업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x-) -	(x95) 190	(x95) 190
여성가족정책실	다함께 돌봄사업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x-) -	(x54) 108	(x54) 108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x1,357) 6,533	(x0.6) 2	(x1,358) 6,535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x-) 11,860	(x9,330) 112,530	(x9,330) 124,390

〈표 4-4B〉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노동민생정책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건설 )	(x1,077) 1,525	(x1,800) 2,520	(x2,877) 4,045
노동민생정책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개보수 )	(x-) -	(x44) 62	(x44) 62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x441) 555	(x123) 154	(x564) 710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x777) 1,124	(x242) 358	(x1,019) 1,48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x562) 562	(x375) 937	(x937) 1,500
복지정책실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x1,238) 2,477	(x15) 30	(x1,254) 2,508
복지정책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x1,225) 3,442	(x578) 1,028	(x1,803) 4,471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x73,884) 160,089	(x280) 607	(x74,165) 160,696
복지정책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x9,936) 19,873	(x609) 1,218	(x10,546) 21,092
복지정책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x202,682) 397,766	(x22,530) 36,911	(x225,212) 434,677
복지정책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x846) 1,452	(x746) 1,257	(x1,593) 2,709
복지정책실	장애인긴급·특별돌봄 지원	(x-) -	(x2,528) 4,268	(x2,528) 4,268
복지정책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x5,274) 9,703	(x201) 302	(x5,475) 10,006
복지정책실	자활근로사업 지원	(x66,388) 97,369	(x3,315) 4,862	(x69,703) 102,231
복지정책실	내일키움통장	(x611) 896	(x323) 473	(x934) 1,370
복지정책실	청년희망키움통장	(x1,303) 1,934	(x281) 389	(x1,584) 2,323
복지정책실	청년저축계좌	(x3,399) 4,999	(x966) 1,404	(x4,365) 6,403
도시교통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x547) 1,047	(x1,600) 3,200	(x2,147) 4,24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x-) -	(x50,625) 73,570	(x50,625) 73,570
도시교통실	저상버스 도입	(x11,685) 29,213	(x1,044) 2,610	(x12,729) 31,824
도시교통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x1,600) 12,488	(x210) 1,010	(x1,810) 13,498

〈표 4-4C〉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도 시 교 통 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x7,000) 17,569	(x10,670) 12,176	(x17,670) 29,745
도 시 교 통 실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x3,231) 6,462	(x369) 738	(x3,600) 7,200
도 시 교 통 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C - I T S 구축	(x-) -	(x1,920) 3,200	(x1,920) 3,200
문 화 본 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x-) -	(x50) 75	(x50) 75
문 화 본 부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	(x19,510) 29,835	(x1,393) 2,124	(x20,904) 31,960
문 화 본 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x15,255) 22,127	(x3,111) 4,466	(x18,367) 26,593
문 화 본 부	풍납토성 복원사업(토지보상)	(x63,000) 90,000	(x6,000) 8,571	(x69,000) 98,57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 보수·정비	(x70) 100	(x83) 118	(x153) 218
문 화 본 부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x-) -	(x119) 170	(x119) 170
문 화 본 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x-) 244	(x140) 200	(x140) 44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x700) 2,000	(x2,412) 2,446	(x3,112) 4,446
문 화 본 부	백악구간 탐방여건 개선	(x-) -	(x49) 70	(x49) 70
문 화 본 부	스마트 한성백제박물관 구축지원	(x-) -	(x102) 205	(x102) 205
문 화 본 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3,672) 7,345	(x155) 311	(x3,828) 7,657
기후환경본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x1,648) 2,139	(x27) 39	(x1,676) 2,178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x80,815) 141,954	(x75,056) 121,945	(x155,871) 263,899
기후환경본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x24,750) 36,980	(x1,850) 3,700	(x26,600) 40,680
기후환경본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x625) 1,250	(x252) 504	(x877) 1,754
기후환경본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x4,539) 7,565	(x2,816) 4,694	(x7,355) 12,259
기후환경본부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x-) -	(x707) 1,532	(x707) 1,532
시 민 건 강 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운영보조)	(x445) 890	(x358) 716	(x806) 1,606

〈표 4-4D〉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시 민 건 강 국	공 공 보 건 의 료	(x5)	(x12)	(x17)
	협 력 체 계 구 축 ( 자 본 보 조 )	10	24	34
시 민 건 강 국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국비)	(x94) 188	(x2) 5	(x96) 193
시 민 건 강 국	응 급 의 료 기 관 지 원	(x4,347) 5,054	(x705) 866	(x5,053) 5,920
시 민 건 강 국	자 살 예 방 사 업 인 력 확 충	(x-) -	(x220) 273	(x220) 273
시 민 건 강 국	정신요양시설 감영관리 환경개선	(x-) -	(x634) 1,269	(x634) 1,269
시 민 건 강 국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x13,878) 20,817	(x332) 498	(x14,210) 21,315
시 민 건 강 국	A I · I o T 기 반 어 르 신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지 원	(x506) 658	(x281) 366	(x788) 1,025
시 민 건 강 국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x-) -	(x113) 169	(x113) 169
시 민 건 강 국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x1,194) 2,388	(x4,962) 9,924	(x6,156) 12,313
주택건축본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x255) 255	(x170) 556	(x425) 811
주택건축본부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x-) -	(x7,866) 18,690	(x7,866) 18,690
푸 른 도 시 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 련 금 융 비 용	(x4,158) 16,635	(x281) 1,125	(x4,440) 17,760
푸 른 도 시 국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x402) 523	(x70) 91	(x473) 615
서울역사박물관	박 물 관 유 지 · 운 영	(x-) 1,816	(x35) 50	(x35) 1,866

## 2) 국비 감액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편성

- 국비 감액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편성의 경우, 기정예산(1,707억 2,4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15.4%, △262억 4,600만원 감액한 1,444억 7,800만원으로 감액조정 요청한 바
  - **역세권청년주택매입**(국비 △78억 6,600만원·시비 △83억 6,000만원)을 포함한 20개 세부사업(△262억 4,600만원)에 대해 감액되는 국비(△150억 9,400만원)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111억 5,200만원)를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특히, 시민건강국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국비 △5,300만원·시비 △5,300만원)과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국비 △2,300만원·시비 △2,3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1억 700만원, 4,6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사업을 잠정보류 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국비는 감액교부하였으나 시비가 증액편성된 사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국비 △900만원·시비 3,400만원),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국비 △4,600만원·시비 1억 5,600만원),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국비 △2,500만원·시비 1억 2,400만원) 3건으로 확인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의 경우, 기정예산(9억 6,400만원) 보다 세출예산을 2,4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 응급의료기금(119구급대 지원) 확정내시(3억 7,100만원)가 3억 6,2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900만원과 이에 대응되는 시비 △9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신고건수 증가로 119구급상황관

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3,300만원), 센터 운영비(900만원)는 시비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의 경우에는 기정예산(61억 1,2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21회계연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변경내시(국비 △4,600만원) 통보에 따라 대응 편성되는 시비를 감액하고, 어르신 식비와 인력 추가 지원 등에 대해 시비 2억 20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은 기정예산(61억 4,300만원)보다 9,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당초 가내시된 1억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500만원도 감액하는 것이나, 서남센터 이전비용으로 시비(1억 4,900만원)를 증액편성 하는 것임

〈표 4-5〉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감액교부에도 시비를 증액편성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예 산 액		추 경 예 산 액		증 감 액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371	593	362	627	△9	34
어르신주거복지시설운영(양로)		2,307	3,805	2,261	3,961	△46	156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100	6,043	75	6,168	△25	124

〈표 4-6〉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감액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x1,435) 5,224	(x△22) △37	(x1,413) 5,186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x2,384) 7,949	(x△9) △32	(x2,375) 7,917
경제정책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x0.7) 1	(x△0.4) △0.8	(x0.2) 0.4
경제정책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x83) 119	(x△40) △57	(x43) 62
복지정책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x471) 943	(x△0.5) △1	(x471) 942
복지정책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x28,266) 42,436	(x△99) △148	(x28,167) 42,288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x1,661) 5,538	(x△39) △133	(x1,621) 5,405
복지정책실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x108) 216	(x△0.4) △0.8	(x108) 216
복지정책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x1,204) 4,016	(x△43) △148	(x1,161) 3,868
복지정책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x566) 1,132	(x△9) △18	(x556) 1,113
복지정책실	희망키움통장 I	(x1,668) 2,470	(x△30) △69	(x1,637) 2,401
복지정책실	희망키움통장 II	(x3,628) 6,123	(x△855) △1,448	(x2,773) 4,675
시민건강국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	(x154) 220	(x△1) △2	(x152) 217
시민건강국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x3,925) 8,295	(x△135) △271	(x3,789) 8,023
시민건강국	모바일 헬스케어	(x323) 420	(x△6) △8	(x317) 412
시민건강국	노로바이러스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급성호흡기(국비)	(x31) 62	(x△13) △27	(x17) 35
도시재생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x17,100) 23,406	(x△5,850) △7,466	(x11,250) 15,940
주택건축본부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x30,577) 62,001	(x△7,866) △16,226	(x22,711) 45,775
시민건강국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x53) 107	(x△53) △107	(x-) -
시민건강국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x23) 46	(x△23) △46	(x-) -

### 3) 국비 추가교부 없는 시비 증·감액 편성

- 국가보조금 사업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순수 시비만 편성 요청한 사업은 23개 세부사업으로 확인되는 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0억원)을 포함한 22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2조 3,820억 1,100만원)보다 5.2%, 1,245억 2,400만원 증액한 2조 5,065억 3,500만으로 편성 요청하려는 것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기정예산(200억원) 국비 41.2%, 82억 5,000만원·시비 59.8%, 117억 5,000만원보다 200억원 증액조정 하는 것으로서 증액분 200억원은 전액 시비로 구성됨
    - 동 사업은 국·시비 5:5로 매칭하는 사업이나 추경예산안 400억원중 국비 비율이 20.6%, 8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바, 사업의 취지가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수 완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조기 달성이 필요할 것인바, 시비의 증액편성에 맞추어 국비도 추가 교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추가 교부가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의 경우, 국·시비 7:3의 매칭비율로 기정예산 12억 1,000만원중 국비(75.2%) 9억 1,000만원, 시비(24.7%)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12월, 국비가 확정(9억 1,000만원)됨에 따라 본예산에 부족 편성한 시비 9,000만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7〉 추경예산안중 시비만 증·감액 편성한 사업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수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추경예산(안)
	계	23	(X1,269,677) 2,382,401	(X-) 124,434	(X1,269,677) 2,506,835
	증 액 사업	22	(X1,269,467) 2,382,011	(X-) 124,524	(X1,269,467) 2,506,535
	감 액 사업	1	(X210) 390	(X-) △90	(X210) 300

〈표 4-8〉 국비 간주처리에 따른 시비대응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x469) 469	(x-) 1,094	(x469) 1,563
여성가족정책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x1,643) 1,643	(x-) 3,834	(x1,643) 5,478
노동민생정책관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x17,040) 42,655	(x-) 11,816	(x17,040) 54,471
노동민생정책관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3%)	(x8,520) 8,520	(x-) 12,139	(x8,520) 20,659
경제정책실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x37,223) 37,223	(x-) 2,135	(x37,223) 39,358
복지정책실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x1,699) 20,201	(x-) 2,514	(x1,699) 22,715
도시교통실	가공배전선 지중화	(x1,449) 28,490	(x-) 4,200	(x1,449) 32,690
문화본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x910) 1,210	(x-) 90	(x910) 1,300
문화본부	문화재돌봄	(x485) 844	(x-) 8	(x485) 852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x606) 606	(x-) 11,745	(x606) 12,351
도시재생실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x100) 100	(x-) 1,000	(x100) 1,100
도시재생실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x700) 700	(x-) 788	(x700) 1,488
푸른도시국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x2,450) 2,450	(x-) 1,050	(x2,450) 3,500
시립미술관	2021년 스마트 서울시립미술관 구축 지원	(x80) 80	(x-) 100	(x80) 180
서울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x400) 400	(x-) 500	(x400) 900
문화본부	풍납토성 미래 발전전략 연구	(x210) 390	(x-) △90	(x210) 300

〈표 4-9〉 추가경정예산안중 국비 추가교부 없는 시비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x368) 1,174	(x-) 268	(x368) 1,443
여성가족정책실	국 공 립 어 린 이 집 확 충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x8,250) 20,000	(x-) 20,000	(x8,250) 40,000
복 지 정 책 실	의 료 급 여 사 업	(x829,633) 1,665,985	(x-) 10,347	(x829,633) 1,676,333
도 시 교 통 실	지 하 역 사 공 기 질 개 선	(x10,703) 19,014	(x-) 13,631	(x10,703) 32,645
안 전 총 괄 실	동 부 간 선 도 로 ( 녹 천 교 ~ 의 정 부 시 계 ) 확 장	(x8,113) 34,056	(x-) 10,800	(x8,113) 44,856
주택건축본부	주 거 급 여 수 급 자 지 원	(x337,641) 495,206	(x-) 15,865	(x337,641) 511,072
물순환안전국	잠 실 상 수 원 퇴 적 물 준 설	(x985) 985	(x-) 600	(x985) 1,585

#### 4. 회계간 전출·입에 따른 세출편성

- '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회계간 법정전출금을 편성하고, 일부 기타특별회계의 재정수요에 따라 회계간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3,343억 2,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4-10〉 회계간 전출·입 편성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전출	전입	추경안 증·감액	산출근거
총	계	334,328	-
일 반 회 계	소 계	267,728	-
	교통사업 특별회계	26,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부족분 전입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15,000</li> <li>○ 지방이양사무 인건비 지원(국비) 77</li>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11,210</li> </ul>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8,600	○ 재원부족분 전입 38,600
	주택사업 특별회계	97,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국민계정) 11,210</li>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정계정) 11,210</li> <li>○ 국민계정 소요예산 부족분 75,000</li> </ul>
	도시개발 특별회계	78,474	○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78,474
	균형발전 특별회계	13,300	○ 재원부족분 전입 13,3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363	○ 재원부족분 전입 10,363
	소방 특별회계	△14,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원시설세(인건비계정) 1,045</li> <li>○ 지역자원시설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2,439</li> <li>○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계정) 594</li> <li>○ 소방안전교부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5,151</li> <li>○ 일반회계 전출금(인건비계정) △23,837</li> </ul>
	수도사업 특별회계	17,888	○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17,888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66,600

※ 주1) 법정전출금 제외.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출금 포함

- 아울러 회계간 전·출입중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을 편성 요청한 바,
  - 관련 조례는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경비를 제한 여유재원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결산상 세계잉여금(3조 4,652억 7,600만원)에서 법정경비(1조 6,895억 7,200만원)등을 제한 여유재원(1조 7,757억 300만원)의 50%에 해당되는 8,878억 5,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을 편성한 것임
  - 또한, '21년 5월,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라 해당 기금의 잔여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고자 일반회계에 기금전출금 66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그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을 당초(128억 3,700만원)보다 578억원 증액된 70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을 당초 (1,459억 2,300만원)보다 531억원 증액된 1,990억 2,3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하고
-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진흥지원계정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을 당초(7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90억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으로 기금전출금을 당초(190억원)에서 64억원 증액된 254억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음

〈표 4-11〉 기금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전출	전입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안
총	계			
일 반 회 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887,851	887,8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잔여자금)	-	6,630	6,63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2,837	57,800	70,637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45,923	53,100	199,023
	서울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지원계정	7,000	2,000	9,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0	6,400	25,400

## 5. 결산이후 국고보조금의 반환

-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이후 국비 사용잔액과 이자를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중앙부처가 반납고지한 즉시 반환하되,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후 최초의 추가경정예산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의 경우, 18개 실·본부·국, 39개 부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99억 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한 것임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일반회계”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2억 6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동 반환금(12억 600만원)중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인 ①**풍납토성 복원** 관련 반환금 3억 8,700만원과 ②**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 반환금 2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4-12〉 반환금 세부내역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

(단위 : 천원)

회계명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연도 <sup>주1)</sup>	반환금 <sup>주2)</sup>
계			1,206,342
도시개발 특별회계	풍납토성 복원	2019	387,262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2019	2,813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보수	2020	445,812
		2019	196,756
		2018	167,432
	문화재방범·방재시설유지관리	2019	6,117
	문화재경비인력배치	2018	1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563 ('21. 6.14)

주1) 국비를 교부받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연도임

주2)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 포함

- 행정안전부는 '20년 6월, 교부받은 회계에서 직접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국비 사용잔액과 이자를 일반회계를 통해 반납할 것이 아니라 해당 특별회계에서 직접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3A〉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쪽)

실·본부·국명	부 서 명	회 계 명	세 부 사 업 명	증 액 요 청	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138,458	p.109
	가족담당관	〃	〃	674,045	p.11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	201,814	p.11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국고보조금 반환	189,470	p.12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국고보조금 반환	3,076	p.131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	국고보조금 반환	90,548	p.138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	국고보조금 반환	18,500	p.16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국고보조금 반환	28,943,498	p.175
	인생이모작지원과	〃	〃	456,829	p.179
	장애인복지정책과	〃	〃	84,155	p.181
	장애인자립지원과	〃	〃	1,942,000	p.184
	자활지원과	〃	〃	125,791	p.18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국고보조금 반환	1,206,342	p.212
	한양도성도감	〃	〃	201,000	p.214
	서울도서관	〃	〃	344,831	p.217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국고보조금 반환	526,713	p.225
	녹색에너지과	〃	〃	219,158	p.226
행정국	자치행정과	〃	국고보조금 반환	25,606	p.238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국고보조금 반환	12	p.252

〈표 4-13B〉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쪽)

실·본부·국명	부 서 명	회 계 명	세 부 사 업 명	증 액 요 청	예산안
관 광 체 육 국	관 광 산 업 과	일 반 회 계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31,300	p.258
	체 육 정 책 과	"	"	354,904	p.259
	체 육 진 흥 과	"	"	399,714	p.26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880,679	p.270
	건 강 증 진 과	"	"	124,009	p.272
	식 품 정 책 과	"	"	37,061	p.273
	감염병관리과	"	"	106,793	p.274
	동 물 보 호 과	"	"	19,131	p.276
	보건환경연구원	"	"	96,351	p.278
	서 북 병 원	"	"	376,022	p.281
도 시 계 획 국	토 지 관 리 과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6,809	p.32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98,813	p.342
	조 경 과	"	"	15,082	p.346
	자 연 생 태 과	"	"	667,966	p.34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	232	p.350
	서 울 대 공 원	"	"	4,150	p.355
서울역사박물관	총 무 과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4,682	p.397
시 립 미 술 관	총 무 과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2,219	p.404
도 시 재 생 실	공 공 재 생 과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국 고 보 조 금 반 환	806,064	p.309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순 환 정 책 과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국 고 보 조 금 반 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400,000	p.362

## 6.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 1) 청년청

□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1권, p.19)

- 동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5,000명)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재테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14〉 사무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80
	서울영테크(청년 재테크 교육컨설팅) 구축 및 교육·상담				180
	36,000원 * 5,000명				

- 청년 재테크 교육컨설팅 플랫폼(서울영테크) 구축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표 4-15〉 서울영테크 구축 관련 사업내용 및 주요 추진 절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1. 7. ~ '22. 12.</li> <li>○ 지원대상 : 만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li> <li>○ 추진방법 : 민간 재테크 전문기관 사업자 선정</li> <li>○ 사업의 주요내용 : 재테크 온·오프라인 교육 및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몽땅 정보통(구:서울청년포털) 연계 (온라인) 재테크 콘텐츠 무상 제공</li> <li>-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와 연계 (오프라인) 교육 및 상담 지원 등</li> </ul> </li> </ul>			
주요 추진절차			
2 0 2 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민간 재테크 전문기관 사업자 선정             서울시             7 ~ 9월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온라인 교육 및 비 대면 1:1 상담 제공             민간 전문기관             10월 ~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오프라인 재테크 교육 실시             민간 전문기관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10월 ~         </div>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청6661 ('21. 5.21)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추진계획” 재구성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지출에 한정되는 예산과목으로서 결국 공무원이 주된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바,
  - 청년 재테크 컨설팅 사업의 수혜자는 동 사업의 참여자인 5,000명의 청년 등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 사례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민간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는 것이나, 일반용역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에 한정되고 있어 동 사업이 추진하려는 ‘소규모 용역’에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하고자 민

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 보조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경우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여 세출과목 수정을 통한 편성오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적합한 예산과목을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차기 추경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 몽땅 정보통 (사업별설명서 1권, p.24)

- 동 사업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청년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청년 CRM)하고 청년 참여 프로그램 신청도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전산개발비 2억 9,8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6〉 추경안 편성현황 (청년 몽땅 정보통)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00,000	
사	무	관	리	비	1,950
	○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50,000원*5명*1회			750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 150,000원*8명*1회			1,200	
전	산	개	발	비	298,050
	○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청년CRM) 구축 - 200,000,000원			200,000	
	○ 청년CRM·서울청년포털·서울공공예약시스템 연계 구축 - 98,050,000원			98,050	

- 동 사업은 전산개발비를 편성 요청함에 따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대상 사업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심사를 받아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타당성 심사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려는 시스템은 뉴미디어 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복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 요청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시까지의 사업추진일정을 검토하여 실제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 당시부터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은 지양되

어야 할 것인 바,

- 동 편성 사례의 경우, 사업비(전산개발비 2억 9,8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21년 9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어 계약체결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되더라도 편성당시부터 사업비중 일부 이월이 전제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 요청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할지라도 소요예산 전액을 일시에 승인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7〉 사업 추진일정

사 업 추 진 절 차	추진기간	추진세부내용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2021.05~2021.05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예산적정성 여부 심의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사전 협의 신청	2021.05~2021.0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중복사업 여부 검토
용역 계약심사,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2021.06~2021.06	제안요청 내용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회 위원회 검토	2021.07~2021.07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화사업 적정사업기간, 과업적정 여부 심의
조달청 사전공개, 입찰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2021.08~2021.09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사업 용역 수행	2021.09~2022.02	청년 몽땅 정보통 시스템 구축 추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26

## 2) 노동민생정책관

### □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별설명서 1권 p.200)

- 동 사업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금 25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8〉 추경안 편성현황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보	험		금	2,500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료 지원			2,500

- 사업별설명서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직접 민간 보험사와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에 해당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4-19〉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내용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1. 9. ~ '22. 8.(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대상 : 서울거주 플랫폼 배달종사자 (수혜대상) 플랫폼 배달 종사자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
○ 추진방법 : 사업자 공모, 민간 상해보험 계약 체결(시가 직접 보험료 전액 부담) 및 상해보험료 지급
○ 보장내역 : 사망, 후유장해(최고), 골절수술 및 진단, 상해입원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21년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서울시가 제도권 밖에 대해 선제적으로 상해보험료를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이나 현행조례가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조례개정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상해보험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기획조정실

#### □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1권, p.296)

- 기획조정실 소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은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7억 3,7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0〉 추경안 편성현황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	737,783	737,783	
기간제근로자 등 보 수	-	7,250	7,250	② <u>초단시간근로자 보수</u> - $\frac{10,523\text{원}}{2\text{명}} \times 14\text{시간} \times 4\text{주} \times 6\text{개월}$ 7,072 ○ 초단시간근로자 보험료      178
사 무 관 리 비	-	320,000	320,000	○ 자문위원회 운영 등      20,000 ○ 1인가구 인식개선사업      300,000
공 공 운 영 비	-	21,833	21,833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유지 관리      21,833
특정업무경비	-	8,700	8,700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대민 활동비      8,700
연구용역비	-	380,000	380,000	① <u>1인가구 실태조사</u> 380,000

※ 자료근거 : '21년도 제1회 추경안

- 증액편성 요청된 ①**연구용역비**(3억 8,000만원)의 경우, 학술용역으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1년 6월부터 8개월간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18일,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하였으나, 지난 5월 25일, 추경안의 첨부서

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1년 7월부터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된 바,

- 불과 15일 사이에 용역 착수시기가 '21년 6월에서 7월로 변경된 것은 용역 발주전 계약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반영함에 따라 순연된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학술용역이 '21년 7월, 착수하여 8개월간 진행됨에 따라 '22년도에 용역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추정안은 용역비(3억 8,0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준공금 등 일부 소요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725만원)는 ②초단시간근로자(2명)에게 6개월간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707만 2,000원을 편성요청한 바,

- 추경안과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면 동 보수(707만 2,000원)는 '20년도 생활임금에 따른 시급 1만 523원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이나,
- 서울시의 기준에는 초단시간근로자 보수의 경우, '21년도 생활임금이 고시되기 전에는 '20년도 생활임금(1만 523원)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21년도 생활임금이 고시된 후에는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20년 9월, '21년도 생활임금이 1만 702원으로 고시되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21년도 생활임금(1만 702원)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20년도 생활임금(1만 523원)을 적용하고 있어 편성요청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소방재난본부

□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사업별설명서 1권, p.312)

- 소방재난본부 소관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은 기정예산 28억 7,300만원 (전액시비)보다 3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21〉 추경안 편성현황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감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2,873		363	3,236	
	시 비	2,873	△1,337		1,536	-
	소방안전교부세	-	1,700		1,700	
사무관리비		45		-	45	
	시 비	45		-	45	-
	소방안전교부세	-		-	-	
② 시설비		2,727		-	2,727	
	시 비	2,727	△1,700		1,027	사업별설명서상 기재누락
	소방안전교부세	-	1,700		1,700	
① 감리비		26		363	390	
	시 비	26		363	390	○ 도봉119안전센터 건설사업관리 용역 : 3억 6,300만원 증액
	소방안전교부세	-		-	-	
시설부대비		8		-	8	
	시 비	8		-	8	-
	소방안전교부세	-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		-	65	
	시 비	65		-	65	-
	소방안전교부세	-		-	-	

※ 자료근거 : '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①**감리비**는 기정예산(2,6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②**시설비**는 '21년도 본예산(27억 2,700만원)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되 소방안전교부세 17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17억원을 감액하여 재원구성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8년 12월, 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19안전센터 건축표준면적 개정내용 등을 반영함에 따라 기준가격이 당초(29억 200만원)보다 37.2%, 10억 8,000만원 증액된 39억 8,200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 관련 법령은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5월 25일, 관련 안건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증액편성 요청된 감리비(3억 6,300만원)의 승인여부는 관련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의결('21. 6.16) 결과, 원안가결

## 5) 경제정책실

### □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사업별설명서 1권, p.349)

- 동 사업은 혁신전략특구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2〉 사무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60
	혁신전략특구 조성 - 혁신전략특구 도입 기초조사 60,000,000원 * 1회			6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용역을 위한 방침을 검토하면 주요 과업내용은 “현 기업규제 제도 및 특구제도의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 도출, 신기술의 쏠 주기 지원방안 제시와 혁신전략특구의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등으로 기재한 바,

〈표 4-23〉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1. 8. ~ '21. 11.</li> <li>○ 사업수행주체 : 용역발주, 수행사 선정 및 계약</li> <li>○ 사업의 주요내용 : 혁신전략특구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시행중인 기업규제 관련 현황조사</li> <li>- 창업지원정책의 연계·집약을 통한 신기술의 숲 주기 지원방안 제시</li> <li>- 혁신전략특구의 지정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총괄적 개념 수립</li> <li>- 혁신전략특구의 중·장기 운영방안 및 국가 특구 연계 발전방향 마련</li> <li>- 「서울비전2030」, 「글로벌 Scale-Up 도시 서울」과 연계한 혁신전략특구 후보지 및 관련 유망산업 제시</li> </ul> </li> </ul>

- ※ 자료근거 :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7362 ('21. 5.24)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 기초조사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349 재구성

- 방침에 적시된 과업내용은 단순조사나 통계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일반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지출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연구용역의 경우 학술용역심의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하여 사전절차를 회피한 사안으로 사료됨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별설명서 1권, p.398)

○ 경제정책실 소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은 기정예산(200만원)보다 4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설계보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4억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4〉 추경안 편성현황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2	483	485	
사무관리비	2	-	2	
시 설 비	-	480	480	○ 신축공사 설계비 등
시설부대비	-	3	3	○ 신축공사 설계 시설부대비

- 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총 486억 7,900만원을 투입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15.10)하고, ①'15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 ②'1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 '20년 3월, 사업부지에서 유적이 발견되어 보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설계에 대해 보완용역을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사업비가 당초(486억 7,900만원)보다 54.9%, 267억 7,200만원 증가된 754억 5,100만원으로 변경되어 '21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재심사)를 다시 이행한 사실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은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

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당초(486억 7,900만원)보다 54.9% 증가된 사안에 해당하여 관련 안건을 지난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4억 8,300만원)의 승인여부는 관련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의결('21. 6.16) 결과, 원안가결

## 6) 복지정책실

###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458)

○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기정예산(138억 8,700만원)보다 198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이 증가하여 143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②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대해 완화된 선정기준을 '21년 하반기에도 유지하고자 55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5〉 추경안 편성현황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13,887	19,800	33,687	
사무관리비	130	-	13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757	19,800	33,557	① 코로나19 물품지원 등(5.5개월) 14,300 ②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5.5개월) 5,500

※ 자료근거 : ① 사업별설명서 1권, p.458~459 ②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9380 ('21. 6.10)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년 5월, 사업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②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의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20년 6월, 선정기준 완화를 '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협의제외대상(일회성·단년도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요청을 철회하고, '20년 12월, '2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시적 기준완화를 '21년 6월까지 연장한 사실이 있음

○ 금번 추경안 중 ②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증액편성 요청된 55억원은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준완화를 '21년도 하반기에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만 1년을 초과하여 기준완화가 시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시사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 '21년 1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협의제외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 등”을 신설한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완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 등”에 해당되어 관련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 사업의 한시지원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 기준개선 등을 요청하여 사업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7) 문화본부

### □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거점 운영 (사업별설명서 1권, p.724)

- 동 사업은 비대면 공연 거점 확보 및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7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6〉 사무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700
			○ 비대면 공연거점 확보 및 공연장 조성 - 2개소*100,000,000원	200	
			○ 비대면 공연기획 및 공연팀 섭외비 등	300	
			○ 운영비	200	

- 관련 방침을 검토하면, 동 사업은 용역을 발주하여 민간 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나,

〈표 4-27〉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거점 운영 사업내용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1. 6. ~ 21. 12.
○ 지원대상 :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분야
○ 사업수행주체 : <u>대행업체 선정공모</u>
○ 사업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공연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확보 및 온라인 송출 영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비대면 공연기획 및 창작활동(영상 제작 등) 지원 : 60개 공연팀·단체 X 500만원</u></li> <li>■ <u>공연영상 편집 및 송출, 홍보비 : 60개 X 200만원</u></li> </ul> </li> <li>- <u>드라이브 스루 등 안전한 공연관람 거점 확보 및 운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설임대, 촬영장비 설치·렌트(카메라, 음향, LED 등) : 2개소 × 1억원</u></li> </ul> </li> </ul>

- ※ 자료근거 :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724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7313 (‘21. 5.27)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 추진계획(안) 재구성

- 사무관리비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행정사무와 직결된 지출에 한정되

는 예산과목이며 공무원이 주된 수혜자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수혜자는 사업 참여자인 민간공연팀·단체(60개) 등으로 사무관리비의 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민간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는 것이나, 관련 기준이 규정하는 일반용역은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에 한정되고 있어 동 사업이 추진하려는 ‘소규모 용역’에 지급하는 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 보조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경우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여 세출과목 수정을 통한 편성오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적합한 예산과목을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차기추경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중 사업명칭 부여기준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명은 외래어를 대체할 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세부사업명에 적용한 것으로 세부사업명만으로는 사업내용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업주관부서로서는 함축적이거나 국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단어에 대해 부득이 외래어 등을 사용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업명칭의 일반적 기준을 벗어난 사례로 사료되는 바
  - 세부사업명은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제출된 추경안중 동일부서(문화예술과)의 사업(①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거점 운영**, ②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이 비대면과 대면으로 상반된 성격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편성 요청한 바, 사업부서로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택이라 할 것이나 다양성을 논하기 앞서 정책의 일관성에 혼돈을 초래하는 사례일 수 있어 현재와 같이 방역에 대한 확신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8) 기후환경본부

###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874)

○ 기후환경본부 소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시설비 16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①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12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②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4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8〉 추경안 편성현황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시설비	-	1,600	1,600	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200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00

○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①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12억원)과 ②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4억원) 모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됨에도 예산안 제출시점('21. 5.25)을 경과한 6월 16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의뢰하여 지난 6월 21일 ①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적정”, ②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조건부”로 심사결과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9월까지 용역비 16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난 5월 31일,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는 추경안을 통해 16억원을 확보하여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12개월간 기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 회계연도중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 용역비(16억원) 전액을 지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 요청한 사례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5월 31일 이행할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1년 9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 사업별설명서의 “사업개요”에는 '21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야만 국고 예산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21년 10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불일치하여 사업내용을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요예산의 의결과는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사업별설명서 1권, p.885)

-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는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②**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모델개발 및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9〉 추경안 편성현황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100	100	①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 80
				②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모델개발 및 인증기준 마련 20

- ①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8,000만원)의 경우, '21년 8월부터 9월까지 성동구 소재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 매장을 설치하고 운영업체를 선정하며, '21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나,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동 소요예산(8,000만원)의 세부산출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지난 6월 3일,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도 사업비의 세부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요예산(8,000만원)이 적정규모로 편성 요청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매장 설치비용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 요청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비용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 요청한 것은 관련 기준에 대한 학습조차 되지 않은 사례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의 조례는 서울시가 작성·제작하는 명칭, 서류, 책자 등에는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명칭에 포함된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가 조례가 정한 원칙에 부합되는 사업명인지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포장폐기물 저감** (사업별설명서 1권, p.888)

- 기후환경본부 소관 **포장폐기물 저감**은 ①**포장폐기물 거점수거공간 및 포장재 없는 전용코너 구축·운영**과 ②**다회용 포장재 등 다회용기 재사용**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6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30〉 **추경안 편성현황 (포장폐기물 저감)**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600	600	① 포장폐기물 거점수거공간 및 포장재 없는 전용코너 구축·운영	500
				② 다회용 포장재 등 다회용기 재사용	100

- ①**포장폐기물 거점수거공간 및 포장재 없는 전용코너 구축·운영**(5억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의 유통매장 등과 시범매장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별로 1개소씩 포장폐기물을 회수하고 리필제품을 판매하는 시범매장(25개소)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②**다회용 포장재 등 다회용기 재사용**(1억원)의 경우, 사업계획을 검토하면 ㉠서울시는 다회용컵(서울컵)을 제작·대여하고, ㉡참여카페(200개소)는 시민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다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하고, ㉢컵 세척·관리업체는 컵을 회수하여 세척후 재공급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이 '20년 6월,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시점인지 재고(再考)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9) 평생교육국

### □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1권 p.947)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1권 p.951)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1권 p.955)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1권 p.959)

○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전출금의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세 전출**의 경우, 관련 법령은 보통세 시세총액의 1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 수입이 당초보다 초과 수납되어 정산분을 전출하고자 기정예산(1조 3,959억 3,000만원) 대비 24.3%, 3,40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담배소비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추가전출이 필요한 정산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2,610억 6,700만원) 대비 7.0%, 183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세 총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수입이 초과 수납됨에 따라 기정예산(1조 7,305억 2,600만원) 대비 13.7%, 2,380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31〉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지 방 세 전 출	1,736,030	1,395,930	340,100	24.3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79,450	261,067	18,382	7.0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68,541	1,730,526	238,014	13.7

※ 자료근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249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는 관련 조례에 따라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13억 6,500만원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21년도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대상 학생수 추계차이(1,995명), '21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1,138명) 등 학생수 변동현황을 반영하여 서울시 분담분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2〉 2021년도 입학준비금 분담금 조정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①분담비율	②지원대상	③총 소요액	④추가분담금	⑤당초분담금
합 계	100	151,707	46,176	4,552	41,624
서울시	30	-	13,852	1,365	12,487
자치구	20	-	9,235	910	8,325
서울시교육청	50	-	23,088	2,276	20,812

※ 자료근거 : ①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4010, ('21. 3.31) “2021년 입학준비금 추진 관계자 회의 결과 알림 및 추가 분담금 송금 요청”  
 ② 소요액은 학생 1인당 지원액 30만원과 제로페이 수수료(당초분 1.5%, 추가분 1.1%) 기준

- 서울시는 기정예산(124억 8,700만원) 대비 10.9%, 13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8억 5,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의 분담비율 30%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3〉 2021년도 입학준비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서울시	13,852	12,487	1,365	10.9
서울시교육청	21,395	21,224	171	0.8

- ※ 자료근거 : ① 서울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249  
 ②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241  
 ③ 서울시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중 입학준비금에 한함  
 ④ 서울시교육청 편성내역은 자체재원에 한함(서울시와 자치구 전입금 편성분 제외)

- 그러나 입학준비금 사업의 50%를 부담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정예산(212억 2,400만원) 보다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부담비율(50%)에 따른 소요액(230억 8,800만원) 보다 △16억 9,300만원 과소편성된 것으로 회계연도중 서울시교육청이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부담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사업별설명서 1권, p.963)

- 동 사업은 공유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8억 4,300만원을 포함한 18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4〉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 서울 런’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안
계		1,835
전산개발비		843
○ 교육플랫폼 시스템 개발 - 735,368,000원*1식		735
○ 감리용역 - 108,000,000원*1식		108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2
○ 교육플랫폼 솔루션 도입 - 892,000,000원*1식		892
○ 교육플랫폼 하드웨어 도입 - 100,000,000원*1식		100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및 방침을 사업근거로 하고 있는 바,
  - 관련 방침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민간 유명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의 스튜디오 등 교육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국민의 교육포털 사이트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제시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중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인터넷수능방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관련 방침의 추진 로드맵에도 “향후 조례 제정 필요”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선언적 개념의 상위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중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관련 방침중 추진로드맵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점을 기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 ‘1단계 시범사업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지원하는 교육플랫폼 구축은 협의대상이 아님’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나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교육 플랫폼 사업은 ①**전산개발비** 8억 4,300만원과 ②**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협의대상 아님”으로 통보하며 “검토의견”중 ‘1차년도에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고, ‘시민 전체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안의 사업내용과 보건복지부의 통보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가 우리 시의회에 당초 편성 요청한 소요예산은 ①**전산개발비**와 ②**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종의 자본형성적 경비임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대상 아님”으로 통보받아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은 ‘온라인 수강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는 경상적 경비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바,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하여 통보된 결과와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사업내용을 비교·확인한 이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향후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등 중앙정부

유사 사업 등과 중복 투자 최소화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방송 (EBS) 등 유사한 학습 콘텐츠가 제작·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청을 두고 있어,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하여 공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966)

- 동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간 유명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학력 수준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4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5〉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4,000
①	과정별 온라인콘텐츠 운영 - 3,400,000,000원*1회	3,400
②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 - 100,000,000원*1회	100
③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500,000,000원*1회	500

- 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 40억원은 ① 과정별 온라인콘텐츠 운영(34억원), ②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1억원), ③ 콘텐츠 개발 및 제작(5억원)을 계

확한 것으로 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가 '공무원을 수혜자로 하는 단순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청소년 80,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반용역으로 간주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가능하다 할지라도 관련 기준이 규정하는 일반용역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에 한정하고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려는 예산과목으로 사무관리비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 보조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세출과목 수정을 통한 편성오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0) 관광체육국

### □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별설명서 2권, p.992)

- 관광체육국 소관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은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①동대문 패션타운 특구 신규 도보코스 개발(2억원), ②송파일대 관광 활성화 컨설팅 용역(8,000만원)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방침을 검토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①동대문 패션타운 특구 신규 도보코스 개발(2억원)의 경우에는 지역 관광코스 발굴 방향 및 코스(안) 마련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②송파일대 관광 활성화 컨설팅 용역(8,000만원)은 국제 관광거점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브랜딩 및 홍보전략을 전문기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로서는 ‘코스개발’과 ‘컨설팅’ 등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일반용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기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은 ①단순조사나 ②통계를 목적으로 한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소규모 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준을 통해 일반용역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에 한정됨을 명시한 바, 동 사업이 추진하려는 컨설팅 등의 용역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사무관리비로 편성 및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심사과정중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과목의 수정여부

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인 바,

-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은 일반용역이 아닌 연구용역 즉, 학술용역에 해당되며 학술용역은 관련 조례 따라 예산안 편성전 학술용역 심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구용역비로 수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에 기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정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과목 수정을 통해 편성오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전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세출과목을 조정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 전액을 삭감하고,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차기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11) 시민건강국

### □ 서울형 헬스케어 관련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별설명서 2권, p.1084)
-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1036)

○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기타보상금 40억원이 포함된 44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①스마트밴드 및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궁극적으로는 ②수집된 개인별 건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③지역사회 1차 진료기관과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사료됨

○ 제출된 추경안에는 ①개인별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 구입 및 참여자에 대한 헬스케어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40억원을 편성하고, 헬스케어 매니저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7,500만원), 자문·홍보비(사무관리비 1억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 예산편성에 앞서 다음의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하고 있고,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할 경우, 사업대상을 수정하거나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편성 요청된 기타보상금 40억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만 20세부터 64세까지 5만명의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사업 참여자’에게 5만원 상당의 스마트밴드를 개별 보급하고, 헬스케어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40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표 4-36〉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 증액
<b>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b>				4,475
	기타보상금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밴드 구입 (50,000명×50,000원=2,500백만원)</li> <li>◦ 헬스케어 포인트 지급 (50,000명×0.3×100,000원=1,500백만원)</li> </ul>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스케어 매니저 인건비 (3,750,000원×25명×4개월=375백만원)</li> </ul>			
	사무관리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홍보비 (100백만원)</li> </ul>			
<b>대사증후군 관리</b>				200
	민간위탁금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 (200백만원)</li> <li>※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전까지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을 활용</li> </ul>			

- 행정안전부의 훈령과 기준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은 ①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서 포상 및 시상의 성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참여자’에게 스마트밴드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갖거나 포상의 개념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표 4-37〉 기타 보상금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 보상금 ①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②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③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④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특히, 기타보상금 편성 근거를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써 예산과목까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지출하라는 ‘편성 및 집행기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사업과 유사한 **서울 청년활동 보장** 이른바 ‘청년수당’의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이후 지난 '20년도 예산부터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편성한 사례가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과목을 적정과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과목 수정시 사업대상 변경이나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하고,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추정안을 시의회에 제출('21. 5.25)한 다음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를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반드시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예산중 기타보상금을 승인할 경우, ‘선(先) 예산 확보, 후(後) 절차 이행’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조례개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유권해석 등의 선행절차가 정비된 이후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추진근거를 관련 법령과 조례로 기재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시장 등의 책무와 사업의 육성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으로
  -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여 스마트워치 등을 보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시장의 책무를 근거로 하였으나 '20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한 바 있음

〈표 4-3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내역

조 례 개 정 전 (’16. 1.7~20.10. 5 이전)	조 례 개 정 후 (20.10. 5~현재)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u>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② 생략</p> <p>③ ..... ..... ..... ..., <u>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u>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 특히,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된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금번 추경안에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전까지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원이 편성 요청된 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의 편성규모를 고려하여 필요시 **대사증후군 관리**에 편성 요청된 민간위탁금 규모도 연동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2) 안전총괄실

### □ 예산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

- 강변북로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별설명서 2권, p.1306)
- 서남권일대 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마련 (사업별설명서 2권, p.1368)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중 **강변북로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17.8km 구간에 대해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비 9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9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난 '21년 3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도 '21년 7월부터 360일간 9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 회계연도중 용역이 준공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됨에도 추경안을 통해 용역비 전액(9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서남권일대 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마련**은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비 5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21년 4월,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도 '21년 7월부터 360일(12개월)간 5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 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13) 주택건축본부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별설명서 2권, p.1471)

○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은 기정예산 4,952억 600만원(국비 3,376억 4,100만원 포함)보다 158억 6,500만원(전액 시비)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사업별설명서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주거급여수급자 수가 증가되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동 사업은 국비·시비·구비를 60:28:12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국토교통부 가내시('20. 9)를 근거로 국비(3,376억 4,100만원)와 시비(1,575억 6,500만원)를 매칭비율(60:28)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 추정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변경내시가 없어 국비에 대해서는 증감조정을 요청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추계를 근거로 시비(158억 6,500만원)만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9〉 추정안 편성현황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sup>주1)</sup>	증 액	추 경 안	산출근거
계	495,206	15,865	511,072	
국 비	337,641	-	337,641	
시 비	157,565	15,865	173,431	○ 사업부서 추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449 ('21. 6.10)

주1) 국토교통부 가내시('20. 9)를 근거로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수급자의 신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국조보조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변경내시 없이 시비만 우선 반영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 대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적기에 변경내시를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안 제출시점('21. 5.25)까지 변경내시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158억 6,500만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 월세 지원** (사업별설명서 2권, p.1494)

- 주택건축본부 소관 **청년 월세 지원**은 기정예산(104억 9,000만원)보다 179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5,000명에 대해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104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 금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의 규모를 당초보다 2만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7,000명을 지원하고자 179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만 변동된 경우에는 협의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4-40〉 추경안 편성현황 (청년 월세 지원)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10,490	17,900	28,390	
사무관리비	60	100	160	○ 홍보비, 자문회의 등 - 하반기 추가 확대모집에 따른 홍보 비용, 회의비용, 설문조사비 등 100
공공운영비	-	15	15	○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사이트 유지보수 - 하반기 추가 확대모집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인력 1명, 2개월 상주 추가) 15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0	17,600	27,600	○ 청년월세 지원금 - 2만 2,000명 × 20만원 × 4개월 (8월~11월) 17,600
민간위탁금	430	150	580	○ 기간제 노동자 운영 등 - 하반기 추가 확대모집에 따른 기간제 노동자(20명) 운영, 기간제 노동자 업무수행시 필요물품(컴퓨터, 전화기 등) 구매 150
자산및물품취득비	-	35	35	○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 - 하반기 추가 확대모집에 따른 시스템모니터링 솔루션 구매 35

- 동 사업은 본예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바, 지난 '19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여 '20년도부터 추진된 신규사업임
- 추경안의 경우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보건복지부와 기협의된 내용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나, 지원대상자 규모만 2만 2,000명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선정기준은 기존대로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가구로 유지하고, 지원대상자만 5,000명에서 2만 2,000명 증가되는 것이라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4월 30일, '21년 하반기부터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던 것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별설명서에는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가구”로 기재하고, 보건복지부와는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로 협의함에 따라 추정안의 심사·의결 결과와는 상이하게 실제 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별설명서 2권, p.1528)

-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설비 7억 7,9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지난 '11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①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6억 300만원)과 ②교통영향평가 용역(1억 500만원), ③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7,000만원)을 시행하고자 총 7억 7,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1〉 추경안 편성현황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시설비	-	779	779	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603
				② 교통영향평가 용역	105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0

- 동 사업의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는 ①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6억 300만원 투입, ②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 500만원 투입, ③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000만원 투입하는 것이나 3개 용역 모두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12개월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1년도 추진일정”에는 총 용역비 (7억 7,900만원)는 동일하나, 사업기간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서의 내용보다 4개월 추가되어 '21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 16개월간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중 용역이 준공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금번 추경을 통해 용역비 전액(7억 7,9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이미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14) 물순환안전국

### □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1)

- 물재생정책과 소관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 내 연구(실험) 실증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에 따라 공모 선정된 업체에게 연구공간(연구 사무실용 컨테이너 10개소 및 테스트베드 5개소)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26억 5,000만원중 금번 추경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물 신축, 매입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편성 요청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로부터 의결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물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편성 요청된 시설비(1억원)를 승인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5월 25일, 관련 안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번 정례회 기간인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소요예산의 편성여부는 관련 안전의의결결과와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의결('21. 6.16) 결과, 원안가결

## 1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사업별설명서 2권, p.1872)

○ 동 사업은 신규 NPO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NPO와 관련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1년도 본예산에는 NPO도서관을 시범운영하고, 공익활동 민간단체 입주·협업 공간을 확충하고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금번 추경을 통해 도서관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당초 (1,2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보강, 도서관 자료 물품구입, 공간BI(블랜딩), 공간관리(청소)를 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를 당초(1억 4,400만원)보다 1억 200만원 증액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2〉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3
도서관 자문단 운영 150,000원*4명*5회	3
공공운영비	102
①시설보강	14
- 계단 출입구 도어 설치	1
- 내부복도 경비시스템용 도어 설치	8
- 썬큰가든 벽면 식재	5
②도서관 자료, 물품구입	26
- 도서구입	18
- 도서관 물품	7
③공간BI(브랜딩)	55
- CI개발과 각종 디자인	11
- 간판, 홍보, 안내 등 제작과 설치	44
④공간관리(청소)	7
1,200,000원 * 6개월	

- 동 사업이 “도서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1,800만원)를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공공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NPO도서관에 소장될 도서는 자본형성적인 경비라는 점에서 비용 성격의 **공공운영비**가 아닌 **도서구입비**로 예산과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③공간BI(브랜딩)를 위해 **공공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한 바, 동 소요예산을 건물 및 건축설비,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판단하여 공간BI(블랜딩) 관련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사업별설명서 및 사업부서의 방침에 따르면 공간BI(브랜딩)는 결국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하고, 간판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건물 및 건축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예산과목인 **공공운영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상공간에 대해 '22년 12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되어, **공공운영비** 보다는 **사무관리비**로 적정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V. 기타 검토의견

### □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업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53)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1권, p.207)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1권, p.356)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425)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599)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별설명서 1권, p.608)
-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620)
- 지하철 환기구 개선 (사업별설명서 1권, p.624)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635)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699)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719)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734)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2권, p.987)
-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별설명서 2권, p.1515)

○ 제출된 추정안중 8개 세부사업은 출연금을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출자금의 경우, 4개 세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요청하고, 2개 세부사업은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과 출자금을 편성 요청한 14개 세부사업중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을 제외한 13개 동의안을 지난 5월 25일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5-1〉 추경안중 출연금 및 출자금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관련동의안 제출여부	사업별 설명서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14,951	253	15,205	5.25 제출	1권, p.5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	11,860	112,530	124,390	〃	1권, p.207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50,844	3,700	54,544	〃	1권, p.356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34,519	843	35,362	〃	1권, p.699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55,762	3,000	58,762	〃	1권, p.719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20,290	685	20,975	〃	1권, p.734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	50,537	400	50,937	〃	2권, p.987
<b>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b>	<b>〃</b>	<b>41,834</b>	<b>600</b>	<b>42,434</b>	<b>미제출</b>	<b>1권, p.425</b>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금	17,050	2,676	19,726	5.25 제출	1권, p.599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8,277	13,631	21,908	〃	1권, p.608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	1,000	300	1,300	〃	1권, p.620
지하철 환기구 개선	〃	580	250	830	〃	1권, p.624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	-	22,945	22,945	〃	1권, p.635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	-	10,824	10,824	〃	2권, p.1515

○ 관련 출연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의 경우, 출연금을 기정예산(418억 3,400만원)보다 1.4%, 6억원 증액한 424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심의결과를 “적정, ’21년 출연동의 470억 7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음

■ 사업부서로서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20년 8월,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으며 관련 동의안의 주요내용에도 ’21년도 총소요예산을 470억 700만원으로 기재한 바,

■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요청한 6억원은 총소요예산중 본예산 부족편성분을 증액 요청한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안건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 또한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대상, 금액 등 일부 규모를 변경하는 것은 별도 사전동의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 그러나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출연금의 과·소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출연 자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바,

■ ’21년도 총소요예산중 본예산 부족편성분을 증액요청한 것이라 하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에 대한 가·부 결정에 한정되는 의결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심사·의결·확정하는 법정절차까지 기속할 수 없어 ’21년도 본예산에 한정된 「출연 동의」와 ’21회계연도중 추가 출연에 따른 「출연 동의」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의견을 회신하며 ① ‘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 동일 회신내용중 ②'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경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의결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함께 회신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동 출연금의 경우,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청년희망플러스통장”으로 변경하고, 지원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3,500명으로 500명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 6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①출연기관의 고유사업 범위에 해당되나 ②사업내용의 변동에도 해당되어 출연금 편성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는 지난 '16년도부터 출연금 편성에 앞서 관련 「출연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있고, 출연금 편성사유가 동일함에도 동일 회계연도내 각각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얻고 있는 바,

〈표 5-2〉 2020년도중 동일사유로 출연동의를 얻은 현황

(단위 : 백만원)

의안명	출연 동의안 제출일	출연 동의안 가결일	출연 동의안 제출사유	관련 추경예산 편성액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 1592)	'20. 5.25	'20. 6.30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DDP 대관 및 임대 수익 손실 보전	541 <sup>주1)</sup>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 1781)	'20. 8.12	'20. 9.15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DDP 대관 및 임대 수익 손실 보전	1,000 <sup>주2)</sup>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 1373)	'20. 3.19	'20. 3.24	보증재원 추가 출연 (30억원)	3,665 <sup>주3)</sup>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 1480)	'20. 5. 4	'20. 5. 8	보증재원 추가 출연 (50억원)	50,000 <sup>주4)</sup>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 1584)	'20. 5.25	'20. 6.30	보증재원 추가 출연 (183억원)	18,300 <sup>주5)</sup>

※ 주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주2)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주3)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주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주5)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 동 사업의 사업취지를 고려할 때 출연금 6억원을 증액편성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미 지난 '20년도의 경우, 2개 출연기관이 고유사업의 범위내임에도, 별도의 출연동의를 제출하여 심사·의결받은 선례가 있어 동 편성 사례의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택건축본부 소관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의 경우, 출자금 108억 2,400만원을 포함한 186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①공사·공단자본전출금(국고보조금 78억 6,600만원)과 ②출자금(시비 108억

2,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출자·출연 심의대상임만 기재하고, 심의결과는 표기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동 사업은 '21년도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이 포함된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표 5-3〉 추경예산을 통한 사업구조화 요청 내역

'21년도 본예산		(단위 : 백만원)	
<b>역세권청년주택 매입</b>			
기정예산	(X30,577) 62,001		
①공사·공단자본전출금	(X7,866) 7,866		
②출자금	(X-) 8,360		
③자산및물품취득비	(X22,711) 45,77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b>역세권청년주택 매입</b>			
추경예산(안)	(X22,711) 45,775		
①공사·공단자본전출금	(X-) 0		
②출자금	(X-) 0		
③자산및물품취득비	(X22,711) 45,77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b>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b>			
추경예산(안)	(X7,866) 18,690		
①공사·공단자본전출금	(X7,866) 7,866		
②출자금	(X-) 10,824		

□ 민간위탁금 편성 관련

- 서울시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추경안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26개 세부사업을 검토하면
  - 기후환경본부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을 포함한 4개 세부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간위탁금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수탁기관 등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인건비 지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간위탁금 편성에 따른 별도의 동의안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시민건강국 소관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은 민간위탁금이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나 회계연도중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인력확충 지원을 위해 국비가 확정내시되어 시비 50%를 대응편성 요청한 것으로 '15년 12월,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한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

〈표 5-4〉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 현황 (동의 불필요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sup>주1)</sup>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증액사유	사업별설명서
기후 환경 본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	390	390	손실지원	1권, p.870
관 광 체 육 국	잠실종합운동장구악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	499	499	손실지원	2권, p.1009
"	목동운동장산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	243	243	손실지원	2권, p.1013
시 민 건 강 국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	(X52) 105	(X52) 105	인건비 지원 <sup>주1)</sup>	2권, p.1117

주1) 회계연도중 국비 신규지원

-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포함한 11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위탁사업의 확대나 변형이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수탁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운영비, 인건비, 국비확정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위탁금 편성에 따른 별도의 동의안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5-5〉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동의 불필요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sup>주1)</sup>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증액사유	사업별설명서
여성가족정책실	여 성 발 전 센 터 운 영	5,917	384	6,302	손실지원	1권, p.36
"	서 울 여 성 공 예 센 터 운 영	2,009	78	2,087	인건비지원	1권, p.49
"	서울시 여성역사 공유공간 운영	349	22	371	유지비지원	1권, p.57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X515) 1,062	(X1) 3	(X517) 1,066	국비확정 내시반영	1권, p.76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1,174	10	1,184	운영비지원	1권, p.83
"	서 울 상 상 나 라 운 영	2,228	510	2,738	손실지원	1권, p.115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단 기 거 주 시 설 운 영	1,034	138	1,172	인건비지원	1권, p.508
"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운 영	2,823	16	2,840	손실지원	1권, p.520
"	장 애 인 체 육 시 설 운 영	1,071	543	1,615	손실지원	1권, p.534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14,290	600	14,890	손실지원	1권, p.612
평 생 교 육 국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2,927	3,841	26,768	손실지원	1권, p.972

※ 주1) **의료급여사업**은 추경안중 민간위탁금을 증액요청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구분되어 동 현황에서 제외

○ 다만, 지난 3월,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등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을 포함한 10개 세부사업은 추경편성 사유가 기존 수탁사업에 대한 확대에 사료되어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포함한 7개 사업은 단순물량증가, 기능개선을 위한 증액 등으로 검토되어 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금 편성에 따른 별도의 동의안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은 지난 '20년 12월, 관련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21년도 본예산을 통하여 확정된 기정사업의 내용중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 촉진 사업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 '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통하여 편성 요청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찾기 사업(장롱면허 자격증 되살리기)’의 경우에도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 촉진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표 5-6〉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사업확대이나 동의 불필요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증액사유	사업별설명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180	1,000	5,180	사업확대	1권, p.31
노동민생정책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143	2,361	10,504	단순 물량증가	1권, p.203
경제정책실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2,328	1,383	3,711	단순 물량증가	1권, p.352
"	서울창업허브 운영	15,460	5,000	20,460	단순 물량증가	1권, p.381
시민건강국	대사증후군 관리	410	200	610	기능개선	2권, p.1036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2,441	74	2,515	물량증가	2권, p.1101
주택건축본부	청년 월세 지원	430	150	580	물량증가	2권, p.1494

- 그러나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포함한 3개 사업은 금번 제 1회 추경을 통하여 당초 수탁사무에 대해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5-7〉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사업확대에 따른 동의 필요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증액사유	사업별설명서
평생교육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268	48	9,316	사업확대	1권, p.981
주택건축본부	주거복지센터 운영	2,627	397	3,024	사업확대	2권, p.1485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X160) 160	(X106) 372	(X266) 532	사업확대 <sup>주1)</sup>	2권, p.1478

※ 주1) 국비공모사업 매칭

-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18년 3월, 관련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추경안과 관련된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에 기편성된 민간위탁금의 사업내용은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②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확인되나,
  - 금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수탁사업은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비를 편성 요청한 바, 기정예산은 운영비 등이나 추경예산은 사업비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른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경우에도 '19년 12월, 관련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추경안과 관련된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난 '19년도에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은 위탁사무는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주거관련조사지원, 지역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며 '21년도 사업에 대한 방침을 검토하여도 기정사업에는

‘1인가구’를 중앙이나 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세부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 ’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통해 편성 요청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는 기존 위탁사무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에 해당되어 민간위탁금 편성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됨
-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은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된 국비(2억 5,500만원)를 지난 1월 간주처리하고, 금번 추경안을 통해 대응편성 필요한 시비 등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이미 ’19년 9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지난 ’19년도에 얻은 동의는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일반적인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로 사료됨
  - 사업부서로서는 지난 ’19년 9월 시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추경안에 편성 요청한 사업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
  - 동 사업 방침을 검토하면, 국토교통부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년 2월, 서울시와 경기권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년 12월,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 9개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①사업설명회, ②공모, ③수행기관 선정발표, ④국비교부 등의 과정은 신규사업에 대한 진행절차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에 해당되어 민간위탁금 편성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표 5-8〉 사업내용 비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의 사업내용	추경안의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멘토링그룹 운영비 ※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비 편성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16개소)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신규추가 ※ <u>사업기간 : '21. 9~12</u>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 지 않은 사업이나 회계연도중 국비간주처리('21. 1.29)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간주처리한 국비에 시비 대응 편성 요청

## VI.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 관련

- 관련 법령은 예산안 제출시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을 통해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가 제출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기정예산(40조 4,123억 8,600만원)보다 10.5%, 4조 2,370억 2,800만원이 증액된 44조 6,494억 1,500만원 규모임
  - 당초 의결된 '21년도 예산의 정책사업 예산규모가 증·감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내 신규 세부사업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업은 물량 조정을 사유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추경안의 정책사업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성과계획서의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 지표 등과 일치하지 않고,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에도 추경안 제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며 당초 의결된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추경안 제출시에는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획조정실에 **1인 가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정책사업으로 신설하는 등 35개 실·본부·국의 기정 예산액을 증·감 편성 요청하고 있으나 추경예산

안을 제출하며 당초 본예산을 통해 확정된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6-1〉 신규 정책사업 추경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정책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1인가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계	2,822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2,084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737

- 지난 '2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네 번의 추경예산을 통해 기정 예산에 대해 수시 경정하였으나 성과계획서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부터 '20회계연도 결산시 대량의 초과달성 및 미달성 발생이 예상될 수 있어 당초 제출된 성과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점이 지적된 사례가 있음
  - '20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은 결과 '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첨부서류인 성과보고서에도 430개의 정책사업목표 지표중 23.2%, 100개의 지표가 미달성 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회계연도중 추경 등으로 재정상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과 일치시키지 않은 결과일 수밖에 없어 '21년도에도 회계연도중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결산시점에 성과보고서 지표의 대규모 미달성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향후 필요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당해연도 최종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일치시키고 의회에 제출된 최종 성과계획서에 대한 임의변경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의 변경 방법이나 의회 제출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바,

- 성과계획서 총괄부서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절차를 구체화시켜줄 것을 건의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재정운용성과가 분석되도록 하여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6-2〉 당초 성과계획 대비 추경안중 예산액 증·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본예산 기준)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기정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2	215	412	504	40,412,386	44,649,415	4,237,028
대 변 인	1	1	2	2	1,620	1,620	-
서울혁신기획관	1	3	5	3	12,099	12,099	-
시민소통기획관	1	4	11	10	94,682	94,802	120
청 년 청	1	1	2	3	101,669	102,149	480
여성가족정책실	1	7	13	19	2,801,258	2,868,501	67,243
노동민생정책관	1	6	12	12	240,106	414,533	174,426
비상기획관	1	1	2	6	3,090	3,078	△11
스마트도시정책관	1	6	12	17	101,151	105,732	4,581
남북협력추진단	1	2	3	2	415	415	-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248	1,248	-
기획조정실	1	11	19	21	741,454	1,806,969	1,065,515
소방재난본부	1	9	21	19	1,745,162	1,751,427	6,265
경제정책실	1	11	16	26	639,069	669,079	30,009
복지정책실	1	7	15	25	8,446,173	8,643,292	197,119
도시교통실	1	10	21	24	3,209,040	3,526,031	316,990
문화본부	1	11	16	33	527,727	559,211	31,484
기후환경본부	1	9	12	20	589,148	736,876	147,727
행정국	1	9	12	15	3,600,789	4,372,359	771,569
재무국	1	6	9	10	2,922,376	3,131,401	209,024
평생교육국	1	4	10	11	3,843,134	4,452,413	609,278
관광체육국	1	7	11	19	250,006	256,135	6,128
시민건강국	1	10	27	26	532,102	579,255	47,153
도시공간개선단	1	1	2	2	30,040	32,697	2,656
공공개발기획단	1	1	2	1	6,601	6,801	200
기술심사담당관	1	2	4	3	1,944	1,944	-
안전총괄실	1	10	13	29	1,232,337	1,359,543	127,206
도시재생실	1	9	12	21	1,554,457	1,636,186	81,728
도시계획국	1	6	6	11	27,126	29,688	2,562
주택건축본부	1	8	15	20	3,277,302	3,504,455	227,152
푸른도시국	1	10	16	27	792,781	832,610	39,828
물순환안전국 <sup>주1)</sup>	1	4	4	8	1,117,274	1,096,335	△20,938
지역발전본부	1	4	8	6	78,030	81,828	3,797
인권담당관	1	1	2	1	1,356	1,356	-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16	6	921,421	955,603	34,181
상수도사업본부	-	-	-	-	738,100	787,498	49,398
한강사업본부	1	2	6	10	83,714	88,410	4,696
인재개발원	1	1	3	4	13,826	12,925	△900
서울역사박물관	1	1	3	5	15,005	15,137	132
시립미술관	1	1	6	4	11,746	11,875	129
의회사무처	1	3	22	8	37,408	37,408	-
감사위원회	1	5	8	7	1,741	1,74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3	471	457	△1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	4	8	4	66,166	66,272	105

주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성과계획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물순환안전국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성과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님

○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도 '21년도 본예산을 통해 확정된 331개 세부사업중 11.7%, 39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규모는 당초 본예산에서 의결된 3조 5,803억 7,300만원보다 1.5%, 570억 6,700만원으로 증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법령은 추경안 제출시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인지 예산서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표 6-3〉 '21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계		1,280,673	1,337,740	57,067
청년청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3,468	3,648	18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191	5,191	1,000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5,400	5,700	30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3,961	17,746	3,784
"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2,015	2,093	78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4,951	15,205	253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902	3,262	360
"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126	131	5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685	2,690	5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35	51	16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1,174	1,443	268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934	3,142	208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113	144	31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66,094	66,294	200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8,616	152,059	3,443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9,271	24,079	4,808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04,423	112,967	8,544
"	특화보육 지원(자체)	42,651	43,049	398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4,541	51,654	7,112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57	259	2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735	907	172
경제정책실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617	2,017	400
"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3,320	4,530	1,210
"	서울창업허브 운영	16,084	21,084	5,000
복지정책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2,220	16,326	4,106
"	어르신돌봄중사자 지원	6,143	6,243	99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60,089	160,696	607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5,538	5,405	△13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5,366	45,682	316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397,766	434,677	36,911
도시교통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645	4,745	100
시민건강국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434	468	33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2,040	2,290	250
주택건축본부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81,687	75,087	△6,600
"	역세권청년주택매입	62,001	45,775	△16,226
푸른도시국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22	62	40
한강사업본부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44	122	△22
인재개발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1,014	817	△197